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11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서영석·노종면·이해식

허성무 • 윤종군 • 문진석

김원이 • 박민규 • 윤준병

정일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.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,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·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관세청 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 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).

#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"을 "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, 제7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"로 한다.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.

제6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9조의6(의약품등의 통관 보류 요청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세 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.

- 1. 제62조 각 호(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의약품등
- 2.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해성평가

를 수행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등

- 3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으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
- ② 통관 보류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의2(의약품 불법판매 및	제61조의2(의약품 불법판매 및
알선·광고 금지 등) ① ~ ⑥	알선·광고 금지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
	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
	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방송
	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
	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
	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
	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
	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
	<u>있다.</u>
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	<u>®</u>
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	
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	
절차,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	<u>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</u>
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법, 제7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
총리령으로 정한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제69조의6(의약품등의 통관 보류
	요청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
	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
	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

- 당하는의약품등에대하여「관세법」제237조에따라 통관을보류할것을요청할수있다.
- 1. 제62조 각 호(제66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의약품등
- 2.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었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등
- 3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으 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 품등
- ② 통관 보류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정한다.